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

2025. 4.

금융보안원 보안연구부

본 해설서는 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 시 금융회사 등의 이해를 돕고 보안 대책 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.

본 해설서와 관련한 문의는 금융보안 레그테크 웹페이지(regtech.fsec.or.kr)의 '업무지원 서비스>클라우드 및 망분리 QnA' 서비스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목차

I.개요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1
1. 연구·개발망 이란? 2. 주요 규제 개선 내용	
Ⅱ. 망분리 예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위협 …	3
1. 소스코드 등 정보유출 2. 오픈소스 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3. 내부로 침해위협 전파	4
Ⅲ. 연구·개발망 구성 절차 및 보안관리 방안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	6
 1. 연구·개발망 구성 절차	

Ⅰ. 개요

본 해설서는 「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」('24.8월, 금융위)과 관련 하여 금융회사 등이 연구·개발망을 안전하게 구성하고 보안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대책을 안내

1 연구·개발망이란?

□ (정의) 프로그램 개발 등 금융서비스의 연구·개발*을 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내부업무망·전산실, 외부망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구성된 망 * 개발(코딩,테스트) 및 AI, SaaS를 활용한 연구·개발

< 망별 수행업무 범위 >

구분	내부업무망(3호망)	전산실(5호망)	연구·개발망	인터넷망
수행 업무	문서 작성, 인트라넷 접속, 민원 등 사무 업무	운영, 보안 관련 업무	개발(코딩,테스트) 및 AI, SaaS를 활용한 연구·개발	인터넷 검색, e-mail 확인 등

< 연구·개발 분야 망분리 구조도(예시) >



* 내부업무망(3호망):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(전자금융감독규정 §15①3)

** 전산실(5호망) : 전산실 내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개발,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(전자금융감독규정 §15①5)

2 주요 규제 개선 내용

- □ (망간 이동 편의 확대) 연구·개발망과 내부업무망 간 논리적 망분리를 허용하고, 소스코드 등 연구·개발 결과물의 망간 이동 편의 확대
 - (연구·개발망 ↔ 내부업무망) 논리적 망분리 허용
 - (연구·개발망 → 전산실) 소스코드 등 개발산출물 망간 전송 허용
 - 이 망분리 예외 허용에 따른 강화된 보안대책 마련
- □ (가명정보 허용) 개인신용정보의 활용은 불가하나,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한해 연구·개발망에서 활용 가능

< (참고)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의 연구·개발 관련 망분리 규제 내용 >

구 분	내 용
감독규정 개정안 (제15조)	이용자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련 법률」 제40조2에 따른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을 준수한 가명정보는 제외)를 처리하지 않는 연구·개발 목적의 경우 망분리 예외 가능 (단, 자체 위험성 평가 및 정보보호 대체 통제를 적용)
	-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넷 접근통제 대책 수립 적용
	- 연구·개발망과 내부망간 독립적인[*] 네트워크 구성
	* 다만, 연구·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시스템간 연결에 한하여
감독규정	논리적 방식으로 분리 가능
시행세칙 <별표 7>	- 연구·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·적용 및 중요정보(고유식별 정보, 개인신용정보 등) 처리여부 모니터링
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	- 연구·개발망의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대책 수립·적용
01110/1	- 중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외부 반출방지 및 망간 전송[*] 허용 등에 따른 보안
	관리 대책 적용
	* 다만, 연구·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의 전산실간 전송 시, 개발산출물 등 필수 적인 경우에 한함

□ (재택근무 허용) 연구·개발망을 통한 IT개발자 등의 재택근무 가능

Ⅱ. 망분리 예외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예상 위험

- ◈ 연구·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 외부 인터넷 상시 연결, 오픈소스 반입 및 활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
- ◆ ^①소스코드 등 정보 유출, ^②오픈소스 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, ^③내부망으로 침해위협 전파 가능 등의 위험이 예상

1 소스코드 등 정보 유출

- □ 금융회사 등의 소스코드*를 보관·처리하는 개발 시스템 등이 외부 인터넷에 연결됨에 따라 소스코드 등 내부 정보 유출될 위험 존재 * S/W 제작 시 프로그램 텍스트, 구성 파일 및 리소스 등을 포함(출처 : NIST)
- □ 공격자는 유출된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보안 취약점을 파악하고,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수행
 - ※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소스코드는 높은 가치를 가진 정보자산에 해당되며, 유출 시 영업기밀 등의 노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

< 소스코드 등 정보유출 관련 예상 피해 >

<u> </u>	<u> </u>
보안위협 전파 경로	예상되는 피해
- 개발자의 실수 등으로 소스코드 공유	- 유출된 소스코드 등 정보를 제3자에게
플랫폼(깃허브 등)에 소스코드 공개	불법 판매(다크웹 등 활용)
-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발 단말기 및	- 코드서명 유출로 이용자 단말기에 악성
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소스코드	코드 설치 및 개인정보 등 유출
유출	-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을 파악하여 전자
- 개발 관련 시스템의 잘못된 구성 및 설정	금융서비스 대상 공격 수행
등으로 외부에서 소스코드, 코드서명	- 디지털 금융서비스 개발 관련 기업의
인증서 등이 유출	주요 지식재산권 유출
- 퇴직 직원이 휴대용 저장장치, 이메일	- 유출사고의 언론 노출 등에 따른 기업
등을 통해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	이미지 및 평판 하락

2 오픈소스 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

- □ 보안 취약점이 존재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개발한 금융서비스에 대한 인증우회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
 - 누구나 수정 가능한 오픈소스 특성상 취약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검증 없이 활용 시 위협에 노출

<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 관련 예상 피해 >

위협 전파 경로	예상되는 피해
-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에 게시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소스코드를 개발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내부업무망·전산실로 이관	- 금융서비스에 취약한 오픈소스가 포함 되어 인증우회, APT(지능형지속공격), 내부 침투 등 취약점을 이용한 다양한 공격 시도 가능
- 취약점이 존재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하여	- 악성코드 등이 삽입된 소스코드가 내부로
프로그램 개발	유입되어 감염 전파로 내부 서비스 마비
- 자주 활용되는 오픈소스의 관리자가 해킹	가능 - 오픈소스를 사용한 서비스의 라이선스
되어 악성코드 등이 유포	의무 미이행으로 문제 발생 등

□ 최근 활용도가 높은 오픈소스(Log4j 등)를 대상으로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배포하는 방식의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

< 소프트웨어 공급망 관련 침해 사례 >

- o 오픈소스인 color.js, faker.js의 관리자가 해당 라이브러리에 악성코드를 삽입하여 패키지 매니저를 통해 이를 배포('22.1월)
- o US-Parser-JS 관리자의 패키지 매니저 계정이 탈취되어 악성 프로그램(암호화폐 채굴기를 설치하여 자격증명을 수집)이 배포(`21.11월)

3 내부로 침해위협 전파

- □ 연구·개발망 망분리 예외로 인터넷 등 **외부통신망에 연결**됨에 따라 제3자 서비스(클라우드 등)를 통해서 침해 위협이 연구·개발망을 경유하여 **내부업무망·전산실**로 **유입**, 내부 침투 가능성 존재
 - 연구·개발망과 내부업무망·전산실 간 데이터 이동 시 보안 관리가 미흡할 경우 연구·개발망으로 유입된 악성코드 등이 내부까지 전파

< 악성코드 감염 등 관련 예상 피해 >

보안위협 전파 경로	예상되는 피해
- 3 rd Party 보안취약점(취약한 페이지 등)을	- 내부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연구·
통해 내부 침투	개발망을 경유하여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
- SaaS 등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악성	유출
코드 유입 또는 장애 발생	- 내부 시스템 및 서비스 등이 중단되어
- 망연계 시스템 등의 보안 통제가 미흡하여	업무 지장 초래
연구·개발망에서 내부업무망·전산실로	- 내부로 랜섬웨어가 유포되어 내부 자료
공격자의 은닉채널 구성	손실

< 망분리 기업 폐쇄망 공격 사례(출처: 과학기술정보통신부) >

○ 공격 수행단계

- (1) 취약한 버전의 SW가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PC 장악
- (2) 망분리 솔루션 제로데이 취약점 식별
- (3) 망분리 솔루션 침투 후 통신 중계용 악성코드 설치
- (4) 통신 중계용 악성코드를 통해 인터넷-폐쇄망 구간 제어
- (5) 폐쇄망 주요 정보시스템 침투

ㅇ 피해 내용

- 폐쇄망에 저장된 중요서버의 기밀 데이터 유출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신뢰 저하 등의 피해 발생

ㅇ 조치사항

- 액티브X 프로그램 정기적 삭제 등 직원PC 보안조치, 망분리 환경에 대한 보안위협 점검

Ⅲ. 연구·개발망 구성 절차 및 보안관리 방안

연구·개발망 구성 절차

연구·개발망 구성은 ① 연구·개발망 활용범위 판단 \rightarrow ② 자체 위험성 평가 \rightarrow ③ 정보보호통제 및 추가 보호대책 적용 \rightarrow ④ 정보보호 위원회 의결 順으로 진행



- 금융서비스의 개발(코딩,테스트) 및 AI, SaaS를 활용한 연구·개발 가능
-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
- 전산실로 연구·개발 결과물(소스코드 등) 등 <mark>망간 자료 전송</mark> 가능



- 연구·개발망 대상 예상되는 위협 식별 및 위협에 대한 위험성 평가
 - 소스코드 등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
 - 오픈소스 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가 발생될 가능성
 - 제3자 서비스(클라우드 등)을 통해 연구·개발망을 경유하여 내부로 침해위협이 전파될 가능성



- [**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**(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〈별표7〉)]
 -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넷 <mark>접근통제 대책</mark> 수립·적용
 - 연구·개발망과 내부업무망·전산실 간 <mark>독립적인* 네트워크</mark> 구성
 - * 다만, 연구: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시스템간 연결에 한하여 논리적 방식으로 분리 가능
- 정보보호통제 및 추가 보호 대책 적용
- 연구·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·적용 및 중요정보(고유식별정보, 개인신용정보 등) 처리여부 모니터링
- 연구·개발망의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대책 수립·적용
- 중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외부 반출방지 및 망간 전송* 허용 등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 수립·적용
 - * 다만, 연구·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의 전산실간 전송 시, 개발산출물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
- [주요 추가 보호대책]
 - 연구·개발망 사용자(단말기)에 대한 식별 등 접근통제 대책 수립·적용 및 모니터링
 -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준수 등 <mark>가명정보</mark> 활용에 대한 <mark>보호대책</mark> 수립·적용
 - <mark>논리적</mark> 망분리(내부업무망↔연구·개발망) <mark>보호대책</mark> 수립·적용



- 연구·개발망 활용 범위(세부 업무 범위, 접근 대상 등) 설정의 적정성
- 망간 자료 전송 관련 사항에 대한 적정성
- 자체 위험성 평가의 적정성
- 정보보호 대체통제 등의 적정성

■ 연구·개발망 활용 범위 판단

- □ 연구·개발망에서는 금융서비스의 개발(코딩,테스트) 및 AI, SaaS를 활용한 연구·개발 업무에 한해 수행 가능
 - 구체적인 **업무수행 범위**(업무 종류, 접근 대상 등)는 **금융회사**에서 **자율적**으로 **정의**
 - ※ 연구·개발망에서 개발 관련 기획·설계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정보보호위원회 승인 후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(원칙적으로 연구· 개발망에서 기획·설계 업무 수행 불가)

< 연구·개발망에서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(예시) >

- o 연구·개발 목적 外 실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
- o 내·외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(시범서비스 제공, 베타 테스트 등) 등 실제 업무
- □ 연구·개발 목적에 한해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가능
 - 가명정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호대책 수립·적용
 - ※ 가명정보는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행위규칙 준수 및 「금융분야 가명 익명처리 안내서」를 참고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필요
- □ 전산실로 연구·개발 결과물(소스코드 등) 등 **망간 자료 전송** 가능
 - 연구·개발망→전산실 간 연구·개발 결과물의 전송은 인가된 서버(형상관리 역할을 하는 서버)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며, 서버 간 연결은 단방향 통신*을 한시적으로 허용
 - * 업무상 불가피하게 전산실 → 연구·개발망으로 소스코드 반출 등 통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CISO의 승인 아래 허용
 - 망간 자료 전송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 등이 자율적
 으로 구성
 - ※ 다만, 취약한 파일 전송 프로토콜 및 원격접속 프로토콜 사용 제한

2 자체 위험성 평가

- □ 금융회사 등은 자사의 업무 환경 등을 고려하여 **연구·개발망 구성**에 따른 **자체 위험성 평가**를 실시
 - o 예상되는 보안 위협(아래 예시 참조)을 빠짐없이 식별하고 위협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
 - ※ 위험성 평가 시 최근 보안 취약점 및 보안사고 사례 등을 고려하여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

< 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시 예상되는 보안위협(예시) >

구 분	내 용
소스코드 등 정보 유출	- 금융서비스 관련 소스코드의 외부 유출 가능성 - 소스코드 유출 시 금융서비스에 미칠 영향 ※ 공격자는 소스코드 분석을 통해 금융서비스 프로그램의 구조나 취약점 등을 파악 가능 - 서비스의 코드서명(Code Signing) 및 암호키 등 유출 가능성
오픈소스 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한 금융사고	 취약점이 있는 오픈소스 또는 안전하지 않은 소스코드가 별도의 보안검증 절차 없이 업무망 및 전산실로 이관될 가능성 취약한 소스코드 사용으로 인해 금융서비스에 취약점이 발생하여 침해사고 등이 발생할 가능성
내부로 침해위협 전파 가능	- 연구·개발망의 인터넷 연결에 따른 악성코드 감염 위험성 - 망간 연계 구간의 접근통제 적절성 - 연구·개발망을 통해 업무망 및 전산실로의 침해 시도 가능성

3 정보보호통제 및 추가 보호대책 적용

□ 망분리 예외 적용 시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 <별표7>에 명시된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(연구·개발 부문) 이행

< 「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」의 망분리 대체 정보보호통제 내용(연구·개발 관련) >

- ① 유해 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넷 접근통제 대책 수립·적용
- ② 연구·개발망과 내부망간 독립적인* 네트워크 구성
 - * 다만, 연구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의 내부 업무용시스템간 연결에 한하여 논리적 방식으로 분리 가능
- ③ 연구·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·적용 및 중요정보(고유식별정보, 개인신용정보) 처리 여부 모니터링
- ④ 연구·개발망의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응 대책 수립·적용
- ⑤ 중요 소스코드 등에 대한 외부 반출방지 및 망간 전송* 허용 등에 따른 보안관리 대책 수립·적용
 - * 다만, 연구·개발망과 규정 제15조제1항제5호의 전산실간 전송시 개발산출물 등 필수적인 경우에 한함
- □ 정보보호통제 이행 시 **자체 위험성 평가**에서 도출된 **위험이 충분히 완화**되었는지 확인하고 **필요시 추가 보호대책을 적용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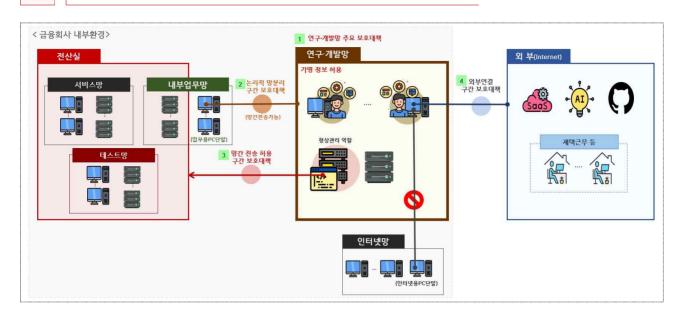
< 추가 보호대책(예시) >

- o 연구·개발망 사용자(단말기)에 대한 식별 등 접근통제 대책 수립·적용 및 모니터링
- o 가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준수 등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·적용
- ㅇ 논리적 망분리(업무망↔연구·개발망) 보호대책 수립·적용 등
- ※ 정보보호통제 및 추가 보안대책의 세부 사항은 '2. 연구·개발망 구성 및 보호대책' 참고

4 정보보호위원회 의결

- □ 망분리 예외에 따른 **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** 및 적용된 **보호** 대책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 의결
 - 자체 위험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보안위험이 보호대책 적용
 등을 통해 충분히 완화되었는지 검토
 - < 정보보호위원회의 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심의·의결 시 검토사항(예시) >
 - o 연구·개발망 활용 범위 설정의 적정성
 - ㅇ 망간 자료 전송 관련 사항에 대한 적성성
 - o 연구·개발망 관련 위험 식별 등 자체 위험성 평가 수행의 적정성
 - o 연구·개발망에 대한 정보보호 대체통제 적용 및 자체 위험성 평가에 따른 추가 보호대책 등의 적정성
- □ **정보보호위원회 의결 이후**에도 **정기적으로** 연구·개발망에 대한 **위험성 평가***를 실시할 것을 권고
 - * 연 1회 정기 모의해킹 실시 등
 - o 연구·개발망 구성의 변화 등 보호대책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위원회 심의·의결 재수행 필요

2 연구·개발망 구성 및 보안관리 방안



1 연구·개발망 주요 보호대책

가. 독립적인 네트워크 구성

- □ 연구·개발망은 내부업무망·전산실, 외부망으로부터 독립된 인프라로 구성·운영
 - ※ 다만, 연구개발 목적으로 망분리 예외 적용 시, 인터넷망에서 활용 중인 정보보호 시스템(백신 등)은 활용 가능 (내부망 자원은 활용 불가)
- □ 자사 업무 환경 등에 적합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연구·개발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
 - 네트워크 구성 시 연구·개발망의 보안위협이 내부업무망·전산실 또는 금융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고려
- □ 실 업무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시스템(공개용 웹서버, 모바일 앱 배포 서버 등)은 연구·개발망에 위치 불가
 - ※ 실제 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·개발 목적에 미 해당
- □ 클라우드 환경에 연구·개발망 구축 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클라우드 이용 관련 사항 준수 필요
 - ※ 금융보안원「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가이드」참조

	연구·개발망에서 무선통신망 사용 시 전자금융감독규정(제15조제6항) 준수 및 사용자 인증 등 보호대책 적용 필요
	※ 전산실 內 설치되는 개발 관련 시스템 등은 무선통신망 접속 차단
	< 연구·개발망에서 무선통신망 사용 시 보안대책(예시) >
0 0 0 0	내부망 및 외부인이 사용하는 무선통신망과 분리 무선통신망 접속 차단시스템 구축 및 실시간 모니터링 수행 무선통신망 관련 장비에 대한 주기적 보안패치 적용 비인가 무선접속장비(AP) 설치 여부 및 중요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AP 접속 시 단말기 인증(MAC 인증 등) 및 사용자 인증 적용 정보 송·수신 시 암호화 적용 보안 프로토콜 설정(WPA2 이상) 및 SSID 숨김 설정
	무선통신망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 수립 등
	단말기 및 시스템 보호대책 연구·개발망에는 인가된 대상*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 수립·적용 * 사용자(단말기), 서버, 네트워크, 시스템 등
Ó	내부업무망 단말기에서 논리적 분리를 통해 연구·개발망으로 접속 가능하며, 구체적인 방식은 내부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※ 인터넷망에서 사용중인 단말기에서는 연구·개발망 접속 불가
	연구·개발 단말기 및 시스템에 대해서도 망분리 外 전자금융 감독규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필요
	연구·개발 시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사용되는 중요정보 * 활용 금지 * 자격증명(Credential), 시스템 접근 키, 코드서명(code signing) 인증서, 암호키 등
	실 데이터를 활용한 테스트, 내·외부 이용자 대상 서비스(시범 서비스 제공, 베타 테스트 등) 등은 처리 금지

(암호화) 등 보호대책 수립·적용

□ 연구·개발 관련 문서의 작성 및 저장이 필요한 경우 문서보안

다.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보호대책

□ 연구·개발 목적으로만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 활용이 가능 하며, 활용 시 가명정보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호대책 수립·적용

<가명정보 관련 법령>

- ①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4조의2(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절차 등) 제7항
- ②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2조(개인신용정보의 제공·활용에 대한 동의) 제6항 9의2.
- ③「개인정보보호법」제28조의8(개인정보의 국외 이전) 등
 - ※ 가명정보 활용시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,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른 국외 이전 제한에 대해 유의할 필요
- 재식별이 가능한 추가 정보나 이용자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 저장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삭제 조치
 - ※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행위규칙 준수 및 「금융분야 가명 익명처리 안내서」를 참고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 필요

라. 침해사고 예방 및 사고대용 대책

- □ 연구·개발망에서 보안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 대책을 검토하고 이를 내부 보안정책에 반영
 - o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연구·개발망을 보안관제 범위에 포함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주기적으로 검토
 - 연구·개발망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고, 주요 파일 업로드·다운로드 내역을 주기적으로 검토
- □ 중요 정보(소스코드 등) 유출* 등 보안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 마려
 - * (예) 소스코드 깃허브 등 공유 플랫폼에 무단 게시된 사실 확인, 연구·개발망 모니터링 과정에서 유출 사실 확인, 퇴사 직원이 중요 소스코드를 무단 반출 등

< 소스코드 유출 시 대응조치(예시) >

- ㅇ 소스코드 유출에 따른 위험성 분석(금융서비스 영향도, 취약성 등)
- ㅇ 소스코드 유출시, 유출 소스코드 폐기 및 보안관제 강화 등 필요 절차 마련
- ㅇ 코드서명 및 암호키 등이 유출된 경우 즉시 관련 서비스 변경 배포
- ㅇ 침해사고대응기관 등에 협조 요청 및 침해 원인 분석 수행 등
- ㅇ 소스코드 노출 시 무단 게시 중단 요청 등

보안사고 발생 시 상세 원인·분석 을 위해 충분한 디지털 증거 를
보존해야 하며 원인분석 前 증거 삭제(PC 포맷 등) 행위 금지
※ 사고 시 금융보안원에 상세 원인분석 요청 가능

연구·개발망에서	발생한 보안사고가 내부 로 확산 되는 것을	방ス
하기 위해 네트의	워크 격리 등 긴급 대응 절차를 이행	

마. 소스코드 등 보호대책

□ 중요 소스코드는 강화된 통제 조치*	권고
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- * 주요 직무자 外 접근 금지, 지정된 시스템 및 단말기에서만 소스코드 접근(또는 저장)허용, 소스코드 접근내역 기록, 소스코드 접근 권한자에 대한 보안서약서 징구 등
- □ 소스코드 저장소에 보관된 중요 소스코드 접근 시 다중(multi-factor) 인증 등 강화된 인증을 수행하고, 접근 내역을 기록·관리 필요

< 소스코드 저장소 구성 시 보안 고려사항(예시) >

- ㅇ 사용자별 최소권한 부여를 위한 세부 권한 설정 지원
- o 소스코드 內 노출된 자격증명 및 민감한 정보 점검 지원
- o 소스코드 저장소 접근 시 멀티팩터(multi-factor) 인증 지원
- ㅇ 소스코드 및 리소스 등의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한 감사로그 생성
- ㅇ 소스코드 구성요소 식별 및 소스코드의 알려진 취약성 점검 지원 등

연구·개발	망 內 :	소스코드	보호를	위한	추가	보호대책을	검토
하여 내부	보안정	책 등에	반영				

< 연구·개발망 內 소스코드 보안관리 정책(예시) >

- o 금융서비스 관련 소스코드 보관·반출 등 보안관리 방안
- ㅇ 구간별(내부업무망,전산실,외부) 중요 소스코드 반입·반출 탐지 등의 관리 방안
- ㅇ 소스코드 보안 관련 내부정책 위반 시 제재 방안
- o 연구·개발망의 코드서명 및 암호키 등의 관리 방안
- ㅇ 소스코드의 운영 환경으로 이관 절차 및 보안 통제방안
- ㅇ 소스코드 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
- ㅇ 프로젝트 종료 시 연구·개발 단말 내 소스코드 등 주요 정보 삭제 절차
- □ 연구·개발에 필요한 **오픈소스** 소프트웨어를 안전하게 **활용**하기 위한 **보호대책 수립·적용**
 - ※ 기타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금융보안원의 「금융분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활용·관리 안내서('22.12월)」참조
- □ 소스코드 등 데이터의 **외부 반출을 엄격**하게 **관리·통제**
 - 특히, 중요 소스코드가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(깃허브 등), 생성형 AI 모델, 이메일·메신저 등에 업로드되거나 공유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등 통제
- □ 소스코드 공유 플랫폼 등에 중요 소스코드가 무단 공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무단 게시 중단 요청 등 대응 절차 마련

< (참고)무단 게시 중단 요청 등 대응절차 >

미국은 밀레니엄저작권법(DCMA)에 의거 무단 게시된 기업 소스코드의 저작권을 주장하여 게시 중단요청 가능 (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에 의거하여 소스코드가국내 관련법에 따라 보호받는 경우 게시 중단 요청 가능)

2 논리적 망분리(내부업무망+>연구·개발망) 구간 보호대책

- □ 내부업무망(3호망)에서 **인가된 사용자(단말기)만** 연구·개발망에 **접근** 할 수 있도록 **통제**
 - O 인가된 사용자에 대한 **적정성**(퇴직, 휴직, 인사이동 등) **여부** 등은 주기적으로 **모니터링**

□ 망간 안전한 데이터 이동을 위한 보호대책 적용 및 모니터링 * 데이터 이동 내역 등 감사 기록 생성·보관, 사전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, 망연계 구간 상시 모니터링 등 이 망 구성, 자료 전송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회사가 자사 IT 환경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망간 전송 허용(연구 · 개발망→전산실) 구간 보호대책 □ 연구·개발망의 인가된 서버(형상관리 역할을 하는 서버)만 전산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, 서버 간 연결은 단방향(연구·개발망 →전산실) **통신을 한시적으로 허용** o 다만, 전산실에서 연구·개발망으로 소스코드 반출 등 업무상 불가 피한 예외사항은 CISO 승인 및 정보보호위원회 의결 후 개발 산출물 반출 허용 □ 망간 자료 전송 채널 및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금융회사가 자사 IT 환경 및 위험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 ㅇ 다만, 취약한 전송 프로토콜 및 원격접속 프로토콜 사용은 제한 □ 전산실로 소스코드 등 데이터 전송 시 사전에 시큐어코딩 점검 및 소스코드 무결성 검증 등 강화된 보호대책* 수립·적용 * 데이터 이동 내역 및 망분리 예외 사항 등 감사 기록 생성·보관, 사전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, 망연계 구간 상시 모니터링 등 외부연결 구간 보호대책

가. 원격 등 외부 접근통제 대책

□ 연구·개발 업무 수행을 위해 **외부 인터넷 환경***(재택 등)에서 연구·개발 망으로 **원격 접속이 가능**하며, 이에 대한 **보호대책 수립·적용** 필요 * 기존 인터넷망의 단말기에서는 접근 불가

- 구체적인 접속 방식은 금융회사 등의 내부 환경에 따라 자율적
 으로 구성
 - ※ 금융보안원의 「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안내서(`20.10월)」 참고 및 외부주문 등을 통해 연구·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「전자금융감독규정(제60조)」 준수

나. 유해사이트 차단 등 외부 인터넷 접근통제 대책

- □ 인터넷 등 **외부 접속이 허용**되는 **범위** 및 **신청 절차** 등에 대해 **내부 기준을 마련**하여 운영
 - 인터넷 접근 대상(단말기, 연구·개발 서버 등)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접근통제 대책 수립·적용, 접근로그 저장 및 모니터링
 - 연구·개발과 무관하거나 해킹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웹사이트 등의 접속 차단 권고

< 연구·개발망에서 차단해야 하는 웹사이트 등(예시) >

- o 악성코드 유포지 및 침해 관련 도메인 및 IP
- o 연구·개발 업무와 무관한 유해사이트 (불법 도박, 상용 이메일 등)
- o 파일공유 사이트 (웹하드, P2P 사이트, 클라우드 드라이브 등)
- o 외부 단말기 및 시스템으로의 원격접속 통신
- o 사내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DMZ 구간으로의 접속 등
- ※ 금융보안원 금융보안정보공유포털(kfisac.or.kr)에서 접속차단 웹사이트 최신정보 확인 가능

다. SaaS 등 접근통제 대책

- □ 연구·개발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 SaaS, 생성형 AI는 이용이 가능하며 필요 보호대책 수립·적용
 - ※「전자금융감독규정(제14조의2)」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준수
 - 다만,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내부업무망에서 사용하는 SaaS는 연구·개발망에서 사용 불가

연구·개발 목적의 망분리 예외 적용에 따른 보안 해설서

발행일 : 2025년 4월

발행인 : 박 상 원

발행처 : 금융보안원

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132

